



전자무역업무 이용(신규·변경·해지) 신청서

은행용

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

※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

본인은 귀 은행과의 무역업무를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에 따르기로 하며 아래와 같이 (신규·변경·해지) 신청합니다.

전자무역 관련 기재사항	신청인	수발신인 식별자(전자무역사업자)	상세 수발신 식별자	전자문서 인증키
			()	
			()	
	한국씨티은행	NET		
이용 신청 업무	<input type="checkbox"/> EDI 업무	전자무역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KNET	<input type="checkbox"/> DACOM
		수입업무·수출업무·L/C 통지업무·내국신용장업무·구매확인서업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e-L/C 업무	전자무역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KNET	
		L/C 통지업무·L/C 양도업무·매입(추심)신청업무·수수료/입금/인수내역 통보업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※ 주의사항 : EDI 업무와 e-LC 업무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, L/C 통지업무는 EDI 방식과 e-LC 방식 중 은행이 임의로 선택한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에 동의함. 특정한 방식으로 통지 받기를 원하는 경우, 다음 중 선택하여 신청함. <input type="checkbox"/> EDI 업무로서 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e-LC 업무로서 통지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지시업무(지급지시용 비밀번호 :)			
지급지시 업무관련 출금계좌	예금과목	계좌번호	예금주	통화
결제 계좌				

- 별첨 : 1. 법인 등기부등본(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) 1부
 2. 법인 인감증명서(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) 1부
 3. 전자무역사업자 가입승인서 사본 1부
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년 월 일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

• 신청인 (인) 또는 서명
 • 주소

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수령필	(인) 또는 서명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담당자	책임자	부점장



전자무역업무 이용(신규·변경·해지) 신청서 접수증

고객용

앞

전자무역 관련 기재사항	신청인	수발신인 식별자(전자무역사업자)	상세 수발신 식별자	전자문서 인증키
			()	
			()	
	한국씨티은행	NET		
이용 신청 업무	<input type="checkbox"/> EDI 업무	전자무역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KNET	<input type="checkbox"/> DACOM
		수입업무·수출업무·L/C통지업무·내국신용장업무·구매확인서업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e-L/C 업무	전자무역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KNET	
		L/C통지업무·L/C양도업무·매입(추심)신청업무·수수료/입금/인수내역통보업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※ 주의사항 : EDI 업무와 e-LC 업무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, L/C 통지업무는 EDI 방식과 e-LC 방식 중 은행이 임의로 선택한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에 동의함. 특정한 방식으로 통지 받기를 원하는 경우, 다음 중 선택하여 신청함. <input type="checkbox"/> EDI 업무로서 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e-LC 업무로서 통지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지시업무(지급지시용 비밀번호 :)			
지급지시 업무관련 출금계좌	예금과목	계좌번호	예금주	통화
결제계좌				

상기와 같이 전자무역업무 이용(신규·변경·해지)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한국씨티은행

지점 (인)

전자무역업무 이용신청서 작성요령

1. 전자무역관련 기재사항

- 수발신인 식별자는 전자무역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가입승인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.
- 상세 수발신 식별자는 업무별로 취급부서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12 자리 이내의 숫자로 정하시고, 해당업무를 ()내에 기입하십시오.
- 전자문서 인증키는 회사의 비밀번호로서 10 자리 이내 숫자로 정하셔야 합니다.
- 은행의 전자무역 관련 기재사항은 은행에서 기입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.

2. 접속 통신망

가입한 전자무역사업자에 V 표시를 하십시오.

3. 이용 신청업무

- 이용하여 처리하실 업무의 에 V 표시를 하십시오.
- 업무를 세분화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타란에 기재 바랍니다.
- 이용 신청업무에 따른 처리 가능한 세부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이용신청업무		처리 가능한 세부업무
<input type="checkbox"/> EDI 업무	수입업무	수입신용장 개설/조건변경업무,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(수입화물인도승락서 발급업무 포함), 선적서류내도 통지업무, 수입어음 DISCOUNT 내역 통지업무
	L/C 통지업무(EDI)	일반신용장 통지, 조건변경신용장 통지, 사전통지신용장 제 3 은행 통지신용장, 국제양도신용장 통지업무
	내국신용장업무	내국신용장 개설/조건변경업무, 내국신용장 통지업무(수혜자 앞 직접 통지업무 포함), 내국신용장 어음내도 통지업무,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신청업무
	구매확인서업무	구매확인서 개설/조건변경업무, 구매확인서 통지업무(판매자 앞 통지업무 포함)
	수출업무	수출환어음 매입(추심)신청업무, 수출환어음처리결과 통지업무
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서 업무	계산서 업무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지시업무	수입결제업무(L/C, D/A, D/P), 당행 내 계좌이체(원화, 외화) 업무, 해외외화 송금업무, 내국신용장 결제업무, 외화자금 국내이체업무, 외국환수수료 납부업무	
<input type="checkbox"/> e-L/C 업무	L/C 통지업무	전자적신용장 통지, 전자적 조건변경신용장 통지, 확인
	L/C 양도업무	전자적 양도(신청, 취소, 동의, 승인)
	매입(추심)신청업무	수출환어음매입(추심)신청(신청, 취소, 조회, 하자동의)
	수수료/입금/인수내역통보	수수료/입금/인수내역통보

- 지급지시업무 관련 출금계좌는 당좌예금, 보통예금, 기업자유예금, 기업금전신탁의 원화예금계좌와 거주자계정의 요구불 외화예금에 한하며,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는 4~6 자리 이내의 영문자 또는 숫자 또는 영문/숫자 혼용하여 정하셔야 합니다.

4. 결제계좌는 각종 수수료 및 결제대금 등이 자동결제되는 계좌로서 자동대체약정서에 의해 신고한 당좌예금, 보통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기업금전신탁에 한합니다.



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

이 약관은 고객과 은행이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전자무역 거래 중 은행 관련 업무(이하 “ 무역업무”라 한다.)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장 공통 사항

제 1 조 [용어의 정의]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 전자무역”이라 함은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의 거래로서 「대외무역법」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.
2. “ 전자적 방식”이라 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(Electronic Data Interchange, 이하 “ EDI”라 한다.)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방식 (Extensible Markup Language, 이하 “ XML”이라 한다.)을 말한다.
3. 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”라 함은 EDI 와 XML 에 의한 정보의 작성, 수신, 송신, 저장을 말한다.
4. “ 전자무역사업자”라 함은 「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“ 전자무역기반사업자” 및 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자”를 말한다.
5. “ 수발신인식별자”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비스 가입 승인서 부여한 이용자 ID로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6. “ 전자문서 인증키값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정한 10 자리 이내의 숫자를 말한다.
7. “ e-L/C”라 함은 XML 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.
8. “ e-L/C 관리시스템”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·보관 및 매입한도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9. “ 접근예체”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
 - 가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
 - 나.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
 - 다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
 - 라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
 - 마. 가족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
10. “ 수출채권”이라 함은 화환어음(환어음)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한다.) 및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(Open Account Transaction)에 의한 수출대금채권을 말한다.
11. “ e-Nego”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채권의 매입 또는 추심 절차를 말한다.
12. “ 전자선하증권”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「상법」 제 862 조 제 1 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.

제 2 조 [적용범위]

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무역업무 중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.

1. EDI 관련 업무
2. e-L/C 관련 업무

제 3 조 [업무개시]

고객이 은행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자무역이용신청 관련 서식으로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수리하는 시점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한다.

제 4 조 [전자문서 인증키값의 교환 등]

- ① 고객과 은행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교환하고 상호합의하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지급지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 1 항에 추가하여 지급 지시용 비밀번호를 미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과 은행이 상호교환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 하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로 한다.

제 5 조 [전자문서의 진위확인]

- ① 전송인의 수발신인식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값이 일치하는 전자 문서는 정당한 전자문서로 본다.
-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제 1 항 외에 지급지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.

제 6 조 [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]

- ① 고객 및 은행은 전자문서를 매일 1 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,전송 익은행영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로 본다.
-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전자무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. 다만, EDI 에 의한 접수인 경우 유선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다.

제 7 조 [업무처리의 중복 방지]

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.

제 8 조 [전자문서의 제 3 자 앞 통지]

- ① 은행이 승인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 3 자 앞으로 전송 요청 할 경우에는 승인 신청 대상 전자문서내에 수신할 당사자의 명칭, 수발신인 식별자 등을 수신자 정보에 포함시켜야 하며, 전자 문서를 수신할 자는 은행과의 전자무역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.
- ② 은행은 동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.

제 9 조 [결제계좌의 지정 등]

- ① 지급지시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은행에 결제 대금(수수료 포함) 등을 인출할 결제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 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거래 신청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 건별로 명시 하여야 한다.
-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 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처리한다.

제 10 조 [예금 등의 인출]

-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(결제원금, 수수료, 수입부담금 등)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제 9 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.
-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화된 예금잔액(지급 가능한 대출한도 포함)에 한한다.
-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, 해약 또는 거래중지 계좌,법적인 지급제한, 기타 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1 조 [이용요금]

이 약관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시 전자무역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이용요금은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 른 다. 다만, 「대외무역법」, 「외국환거래법」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은행에 위임한 업무 중 은행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.

제 12 조 [업무처리의 중지, 해지]

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
2.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
3.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을 경우

제 13 조 [면책]

이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4 조 [약관변경]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.
- ② 게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5 조 [약관적용의 우선순위]

- ①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과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대외무역법」, 「외국환거래법」, 「외환거래기본약관」, 「외국환거래약정서」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2 장 EDI 관련 업무 특약

제 16 조 [전자문서의 교환]

- 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자기의 수발신인식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교환하기로 한다.
-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 4 조 제 2 항에 의해 제출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[종이서류 출력]

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은행에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대로 출력하기로 한다.

제 3 장 e-L/C 및 e-Nego 관련 업무 특약

제 18 조 [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]

- ① 고객은 "전자무역업무 서비스" 신청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전자 무역기반사업자 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고객의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 및 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.

제 19 조 [전자문서의 조회]

- ① 고객은 자기의 수발신인식별자를 이용하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.
- ②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e-L/C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자 문서 및 은행거래 관련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.

제 20 조 [종이서류 출력]

고객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서의 종이서류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정한 서식에 의거 출력하여 교부한다.

제 21 조 [e-Nego 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]

- ① 고객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e-Nego 를 신청하고, 은행이 승인한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「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 시행규정”) 제 8 조에 따라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상업승장, 보험증권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 서류(이하 “ 기타 관련 서류”)도 이를 준용한다.
- ② 은행은 양도된 전자선하증권을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행규정 제 12 조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 관련 서류도 이를 준용한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 및 기타 관련 서류가 서면선하증권 등의 종이서류로 전환된 이후에 고객이 e-Nego 를 취소 신청하는 경우, 은행의 e-Nego 관련 서류의 반환 등은 종이서류에 의한 매입취소 절차에 따른다.
- ④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정 및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이용약관을 따른다.